

2. 大邱直轄市條例規則等公布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查報告書

1. 審查過程

- 提出日字：1993年 9月 1日
- 提出者：大邱直轄市長
- 回附日字：1993年 9月 2日
- 上程 및 議決
 - 제24회 대구직할시의회(임시회)
 - └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 '93. 9. 8
 - └ 제1차 내무위원회 의결 : '93. 9. 8

2. 提案說明 要旨

- 공포방법 확대 및 명확화
 -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제를 “시보, 시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제
 - “게시판”에 게시를 “시 게시판”에 게시로
- 공포일에 관한 규정 조정
 - 현행 : 조례규칙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
 - 조정 : 조례규칙등을 게재한 시보·시공보·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시 게시판에 게시된 날

3. 檢討報告 要旨

본 개정조례(안)중 조례 규칙등의 공포를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매월 3회씩 발행되는 “시공보”에도 확대 게시하는 (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음.

다만, “게시판”에 게시도록 규정된 것을 “시게시판”에 게시도록 한정시키는 것보다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규칙등은 많은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히 알리기 위해 뉴스로 방송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게시판에 확대 게시하는 방안도 향후 신중히 연구·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됨.

4. 質疑 및 答辯

- 없음

5. 討論事項

- 없음

6. 審查結果

- 원안가결(전원 찬성)

大邱直轄市條例規則等公布에關한條例改正案

1. 제안사유

- 조례규칙등의 공포를 현재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공보”에도 게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또 게시판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므로 이를 시(市)게시판으로 특정화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2조 내지 제14조)

3. 주요골자

- 조례규칙등의 공포방법 확대 및 명확화(안 제7조)
 -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 시보·시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시공보”추가)
 - 게시판에 게시 → “시”게시판에 게시
- 공포일에 관한 규정 조정(안 제8조)
 - 현행 : 조례규칙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
 - 조정 : 조례규칙등을 게재한 시보·시공보·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시 게시판에 게시된 날

4.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대구직할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를 “시보·시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게시판에 게시로서”로 한다.